

"SAFER SHIPS, CLEANER SEAS"

중앙도선운영협의회

수신 : 수신자 참조

참조 :

제목 :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알림(이첩)



1.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-2889(2026.06.25.) 관련입니다.

2.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, 물가상승 및 선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등 도선선 운영에 따른 운항 원가를 보전하고자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약 8.9% 인상하기로 하고, 2026년 7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붙임 문서와 같이 도선선료 변경신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수리되어 알려드리니,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관련 문서 사본 1부. 끝.

중앙도선운영협의회
위원장 조 용



수신자 :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, 한국도선사협회장,
한국해운협회장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.

간사 임재근

시행 중앙도선협 제566호 (2026. 06. 25.) 접수 ()
우 07238)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(오성빌딩 10층) / www.kmpilot.or.kr
전화 (02)784-6022 전송 (02)783-0931 / kmpilot@kmpilot.or.kr



해양수산부

해 양 수 산 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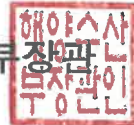
수신 중앙도선운영협의회

(경유)

제목 도선선료 신고 수리 알림

1. 중도협-565(2026.6.16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도선법」 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제출한 도선 선료 신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, 전국적으로 도선선료가 인상되므로 해당 조정 시행('26.7.1) 전 국적·외국 적선사, 대리점, 화주 등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해양수산부



주무관	이진희	행정사무관	이정규	과장	전결 2026. 06. 25. 정동원
협조자					
시행	항만물류산업과-2889	(2026. 06. 25.)	접수	M00019854973	(2026. 6. 25.)
우	48755	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			/ http://www.mof.go.kr
전화번호	051-773-5772	팩스번호	051-773-5789	/ ljh9771@korea.kr	/ 비공개(5)

도선선료 변경사항 대비표

「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」 【별표 2】 도선선료(구 시행규칙 20조 관련)

□ 도선선료

도선선 운항거리	도 선 선 료		비 고
	현 행	변 경	
3해리 이하	○ <u>7만1천580원</u>	○ <u>7만7천980원</u>	
3해리 초과	○ 3해리를 초과한 때 1해리(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)마다 <u>7천80원</u> (단, 마산, 대산항 도선구는 <u>9천80원</u> 으로, 인천·여수·평택·목포항 도선구는 <u>8천310원</u> 으로 한다)	○ 3해리를 초과한 때 1해리(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)마다 <u>7천710원</u> (단, 마산, 대산항 도선구는 <u>9천890원</u> 으로, 인천·여수·평택·목포항 도선구는 <u>9천50원</u> 으로 한다)	